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560호 2023. 1. 27.(금)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3-120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

히					
최					
람					

발행: 고성군, 편집: 인구청년추진단(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3-120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7. 고 성 군 수

1. 개정 이유

「공동주택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범위를 정비(안 제2조)
- 나.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토록 명시하고, 안전 등 긴급지원은 지원 제한 공동주택도 지원 가능토록 예외 조항을 신설(안 제4조)
- 다.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신설(안 제5조)
- 라.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안 제6조~제9조)
- 마.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변경, 심사표·홈페이지 공개·보조사업자의 이의 신청 등을 신설 (안 제11조, 별표1, 별표2)
- 바. 관리주체가 사업비 집행시 사업자 선정 및 입찰 방법 등을 신설 (안 제11조의2)
- 사.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확정시 적합여부를 현지조사하여 결정토록 신설(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3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건축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
-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 2) 전화: (055)670-2273, 팩스: (055) 670-2199
-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건축개발과(전화 055-670-227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관리주체"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
 -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
 - 다. 삭제
 - 라. 삭제
- 제4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을 "(보조금의 지원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군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을 "공모 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주택단지"로, "없다"를 "없다.(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 제5조제5호 중 "시설설치"를 "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8호) 중 "공공시설"을 "공용시설물"로 한다.
 - 8.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신설 · 유지보수
 - 9. 승강기 교체 또는 보수
 - 10. 외벽 균열보수, 도색 및 방수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지원단지 선정·심의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수 있다.
-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보조사업자로 결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 ② 비의무관리 대상 및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시 군수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의 내용 및 적합 여부를 현지 조사 해야 한다.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 ③ 군수가 현지조사하여 사업량이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13조제2호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 제15조 중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u>다.</u>	
1."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	<u><삭 제></u>
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u>을 말한다.</u>	
2."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	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u>한다.</u>	<u>말한다.</u>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	가.「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	제10호
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
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u>얻어 선정된 대표자</u>
<u>사업주체</u>	<u>다.</u>
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u>라.</u>
<u>주택관리업자</u>	
라. 가목부터 다목 규정 이외	
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u>회의</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4조 <u>(보조금의 지원)</u> ① <u>군수</u> 는	제4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체가 수	행하는 경	공동주티	は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기원	<u>할</u> 수 있
다.			

-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u>공동주택</u> <u>단지</u>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 라 한다)는 5년(1천만원 이하 지원시 3년) 이내에 다시 보조 금을 신청할 수 <u>없다</u>. <후단 신 설>
-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u>별</u> 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 원하되 노후・영세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 저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4. (생 략)
- 5. 태양광발전설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u>시설설치</u>
- 6. 7. (생략)

공모 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
② <u>공동주택단</u>
<u>ス</u>]
<u>없다.(다만, 안전</u>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u>별</u>
<u> </u>
제5조(지원대상)
1. ~ 4. (현행과 같음)
5
<u>시설 설치</u>
6 · 7 (현행과 같음)

<신 설>

<u><신</u> 설> <신 설>

의로 결정한다.

8. 그 밖에 위태롭고 해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6조(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별표의 지원기준 이내에서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군수 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심 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고 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 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고성군의회 의원
- 2.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학식

8. 생왈페기물 모판시설의 신설
<u>• 유지보수</u>
9. 승강기 교체 또는 보수
10. 외벽 균열보수, 도색 및 방
<u>수</u>
<u>11</u>
<u>공용시설물</u>
<u><</u> 삭 제>

<삭 제>

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건축·토목 관계전문가

 3. 군 소속 관련 담당관·과장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u>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u>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 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 나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 동주택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

<삭 제>

- 4. 지원대상이 둘 이상으로서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시설물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 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군 | <삭 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여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수당,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에 제10조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 용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제10조(보조금의	신청) -	
		 제출
<u>해야</u>		
1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u>3분의2</u> 이상 동의서) 1부

2. ~ 4. (생 략)

- <u>제11조(대상사업 결정) ①</u> 군수는 <u>제11조(</u>지원대상 결정 등) ① 군 제10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 부
 -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 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 과를 당해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 3분의 2

2. ~ 4. (현행과 같음)

수는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 | 리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 에는 별표 2의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5조에 따른 지 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리 고, 지원단지 선정 · 심의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 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 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수 있다.

제11조의2(사업비 집행을 위한 사

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 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 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 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업자 선정) ① 보조사업자로 결 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 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 야 한다.

② 비의무관리 대상 및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시 군수에게 입찰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관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

제출해야 ----.

1. · 2.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 료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의 내용 및 적합 여부를 현지조사 해야 한다.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는 보조금을 확정하여 관리주체에 게 통지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 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신 설>

- 제13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삭 제
 -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u>3월</u>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 4. (생략)
-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 리 등) ① (생 략)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 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

③ 군수가 현지조사하여 사업량
이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
로 지급한다.
제13조(지원결정의 취소)
2
3개월
3. • 4. (현행과 같음)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
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진단전문기관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 른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공단
- 3. (생략)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 <삭 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u>다.</u>

따른	안전진단전문기	관

-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
 - 3. (현행과 같음)

제15소(순봉)		. — — —	
	「고성군	지병	보조
금 관리 조	.례」,「고	성군	회계
관리에 관힌	<u> </u> 구칙		

[별표] <현행>

공동주택 지원 기준(제4조제3항 관련)

세대수	지원비율(%)	지원상한액
100세대 이상	사업비의 50%이하	4천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이하	3천만원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이하	2천만원
30세대 미만	사업비의 80%	1천만원

[※] 지원 비율에 의한 지원 금액이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 상한액까지만 지원하며 나머지 는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표 1] <개정 2000. 00. 00.>

공동주택 지원 기준(M4조M3항 관련)

세대수	지원비율(퍼센트)	지원상한액
150세대 이상	사업비의 50이하	5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4천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이하	3천만원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이하	2천만원
30세대 미만	사업비의 80	1천만원

[※] 지원 비율에 의한 지원 금액이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 상한액까지만 지원하며 나머지 는 자부담으로 시행한다.

■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표 2] <신설 2000. 00. 00.>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 평가표(제6조제2항 관련)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비고
	준공연수 (20)	 ● 준공 후 30년 이상 ● 준공 후 25년 이상 ~ 30년 미만 ● 준공 후 20년 이상 ~ 25년 미만 ● 준공 후 15년 이상 ~ 20년 미만 ● 준공 후 10년 이상 ~ 15년 미만 	20 16 12 8 4		사용승인일 ~ 신청일
	공동주택 규모 (10)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 30% 미만	10 8 6 4 2		_
정량평가 (부서평가) 70점	세대 수 (10)	■ 30세대 미만 ■ 3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 10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10 8 6 4 2		_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0)	■ 최초지원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3년 미만	10 8 6 4 2		국도군 보조금 포함 마지막 지원 받은 날 ~ 사업신청일
	보조금 지원 횟수(20)	■ 최초 지원 ■ 1회 지원 ■ 2회 지원 이상	20 14 7		군 보조금 지원 사업
	긴급성 (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 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
정성평가 (부서평가) 30점	효과성 (10)	■ 신청 시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
	필요성 (10)	■ 신청 시업의 필수 공용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
가점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도가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	+20		_
		■ 전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단지 중 미선정된 단지(서류 미비 제외)	+5		_
감	점	■ 보조금 지원 중점 지원항목 대상 ■ 10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10년간 보조금 부정수령 등 지원사업 부실 사례	+5 -5		군 조례 제5조 -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약

가. 관련 조문: 제6조(보조금의 지원 지원)

나. 비용발생 요인: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사업대상: 관내 사용검사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사업규모

세대수	지원비율(%)	지원상한액
150세대 이상	7 JOHNIOI EOWOIZL	5천만원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사업비의 50%이하	4천만원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이하	3천만원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사업비의 70%이하	2천만원
30세대 미만	사업비의 80%이하	1천만원

나. 추계의 결과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출	군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3년 ~ 2027년 일반회계로 편성

(단위: 천 원)

(단위: 천 원)

구	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의존	재원	-	-	-	_	_	_
재원 조달	자처	재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조달	7]	타	_	-	-	_	_	_
	소	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작성자: 건축개발과장 이 현 주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 , 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u>찬반의견</u>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구경한 구경자유								

	,	